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 동 주 택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근거 신설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내용

가.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토대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관리규약의 준칙 항목에 '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'을 추가(안 제19조)

- 1)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자체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배포하는 관리규약 준칙(안)에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준칙 내용을 정하는 관련 법령에는 홈네트워크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
- 2)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에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가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
- 3)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홈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

나.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신설에 따른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교육 필요,
이로 인한 교육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
(안 제95조)

- 1) 홈네트워크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신설(시행규칙 안 11조)되면서 원활한
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교육이 필요, 이로 인해 교육 수요가 급증할
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교육기관이 주택관련 기관 2개소에 불과
- 2) 홈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·지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관
으로 정보통신 등 관련 전문기관·단체를 추가하고자 함
- 3) 홈네트워크에 대한 역량 강화로 비상상황 발생 또는 입주민 요구에
대해 신속하고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29호를 제3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9.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제95조제7항 중 “주택관리사단체”를 “주택관리사단체 등 관련 전문기관
· 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관리규약의 준칙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(이하 “관리규약준칙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.	제19조(관리규약의 준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~ 28. (생략)	1. ~ 28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9.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</u> <u>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u>
<u>29. (생략)</u>	<u>30. (현행 제29호와 같음)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5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⑥ (생략)	제95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<u>주택관리사단체</u> 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택관리사단체 등 관련 전문기관·단체</u> ----- -----.
⑧ ~ ⑩ (생략)	⑧ ~ ⑩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65